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21

발의연월일: 2024. 11. 15.

발 의 자:문금주·문정복·박민규

신영대 • 박해철 • 한민수

송옥주 • 박홍근 • 주철현

이학영 · 황정아 · 김 현

정진욱 · 조계원 · 김문수

김영환 · 이광희 의원

(17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이하 "불법어획물"이라 함)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불법어획물을 직접 판매하는 행위 외에 불법어획물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부재함에 따라 온라인 중개사이트를 통한 불법어획물 판매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불법어획물 판매 중개 및 구매 대행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2년 이

내에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어획물의 유통·판매를 근절하여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70조).

법률 제 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금지"를 "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품"을 "제품(이하 이 조에서 "불법어획물"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불법어획물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제2항을 위반하여 제70 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불법어획물의 판매를 중개하 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 처분내용, 위반자의 성명 또는 상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①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어획물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 금지 등) ①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 원이나 그 <u>제품</u>을 소지・유통 -----제품(이하 이 조에 ·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 서 "불법어획물"이라 한다)---는 아니 된다. ②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의 판 <신 설> 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불법 어획물의 판매를 중개(「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통신판매 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 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 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 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 매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2년 이내 에 2회 이상 제2항을 위반하여 <신 설>

제70조(과태료) <신 설>

<u>①</u>·<u>②</u>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 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수 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 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부 과·징수한다.

제70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불법어획물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 처분내용, 위반자의 성명 또는 상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과태료) ①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어획물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 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 <u>②</u>·<u>③</u> (현행 제1항 및 제2항 과 같음)
- <u>④</u> 제1항부터 제3항까지-----

-----.